

#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칙

제정일자 2022.02.09.  
개정일자 2023.06.01.  
소관부서 교무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칙은 동의과학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교육목표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종류)** 본 대학교에는 전문기술석사과정(마이스터대 과정)을 둔다.

**제3조(교육목적)**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편성과 정원)** 설치된 학위과정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| 계열 | 학과     | 학위명        | 정원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보건 | 물리치료학과 | 물리치료전문기술석사 | 10 |

**제5조(수업)**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주말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입학

**제6조(입학시기)** 입학(재입학, 편입학 포함)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(28일) 이내로 한다.

**제7조(입학지원 자격 및 제한)**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1.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
2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3. 관련 분야 재직경력(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)이 3년 이상인 자

4. 제3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8조(입학지원절차)**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
**제9조(입학전형)** 입학 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.

**제10조(재입학)**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 
② 재입학이 결정된 자는 재입학금과 함께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편입학)**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### 제3장 등록 · 휴학 · 복학 · 제적

**제12조(등록)** 본 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휴학)** 질병, 병역의무, 임신·출산·육아, 창업,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14조(휴학기간)** ① 휴학기간은 1년 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 
② 군입대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15조(복학)** 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4주(28일)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6조(자퇴)**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17조(제적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2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3. 징계에 의해서 제적처분을 받은 자

## 제4장 수업연한, 교육과정, 수료

**제18조(수업연한)**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.

**제19조(학년도)**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20조(학기)** 전문기술석사과정은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3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21조(수업일수)**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

②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교과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정규학기에 개설한 교과목을 보충할 목적인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규학기 이외의 기간에도 기존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22조(교육과정)** 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적이 변동된 사람은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본 대학교의 단기직무과정, 전문학사학위과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23조(수료)** ①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,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수료인정 시기는 매학기말로 하여,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## 제5장 학점인정, 성적, 출결, 유급

**제24조(학점교류 및 인정)**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생이 타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강과 타 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생의 본 대학교 전문기술석사과정 수강은 총장의 승인 받아 허가 할 수 있다.

②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·연구 또는 실습 및 단기직무교육 등은 본 대학교 [선행학습학점인정규정]에 의거 졸업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25조(성적평가)**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출석상황, 평소학습태도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| 등 급            | 배 점    | 평 점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A <sup>+</sup> | 100~95 | 4.5 |
| A <sup>0</sup> | 94~90  | 4.0 |
| B <sup>+</sup> | 89~85  | 3.5 |
| B <sup>0</sup> | 84~80  | 3.0 |
| C <sup>+</sup> | 79~75  | 2.5 |
| C <sup>0</sup> | 74~70  | 2.0 |
| D <sup>+</sup> | 69~65  | 1.5 |
| D <sup>0</sup> | 64~60  | 1.0 |
| F              | 59이하   | 0   |
| P              |        | 불 계 |

②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등급으로 한다. 이때, 취득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.

③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 취득(F)으로 처리한다.

④ 임상사례 프로젝트(CASE: Case Advanced Study Education)의 평가는 서면(50점), 구술(50점)을 합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일 시 합격(Pass), 미만일 시 불합격(Fail)으로 처리한다.

**제26조(출결)** ① 매학기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② 매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취득한 점수도 인정하지 않는다.

**제27조(출석인정)** 다음 표와 같은 사유로 결석한 자는 증빙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수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결 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
| 사 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         | 5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         | 2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가 부가하는 의무사항(징병검사, 예비군 훈련) | 해당기간          |
|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주 이내(진단서 첨부) |
| 총장이 승인한 학내·외의 행사참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사기간          |
|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법정감염병으로 감염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주 이내(진단서 첨부) |
|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기간          |

## 제6장 학위수여

**제28조(학위수여)** ① 제23조 1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상사례 프로젝트(CASE)를 통과한 자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29조(임상사례프로젝트평가 및 학위수여 심의)** ① 임상사례 프로젝트의 평가는 예비 발표와 본 발표로 진행되며 평가위원 3인의 점수 평균값이 80점 이상 인 경우 합격 처리한다.

② 예비 발표 및 본 발표에서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뒤,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③ 예비 발표 및 본 발표에서 합격한 자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전문기술 석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30조(학위수여 취소)**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
2.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

## 제7장 포상 및 징계

**제31조(학생지도·의무)**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은 본 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신분에 어긋

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, 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업에 정진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장학금 및 연구 보조)** ①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에 따른다.

**제33조(포상 및 징계)** ① 학교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학과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## 제8장 위원회

**제34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본 대학교 보직자, 담당교원, 산업체인사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무처장 및 해당학과 학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③ 전문기술석사과정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35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.

**제36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특별히 규정된 직무 외에 전문기술석사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칙 및 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학생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6.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자체평가 관한 사항
7. 기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37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장은 중요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

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9장 학칙 제·개정 절차

**제38조(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)** 학칙을 제·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·개정안의 취지,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39조(공고기간)** 학칙 제·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.

**제40조(의견제출 및 처리)**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·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당해 제·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41조(심의)**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·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42조(공포절차 및 공포)**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후,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.

## 제10장 준용규정

**제43조(준용규정)** 기타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의과학대학교 학칙(DIT-2-1-01)을 준용한다.

**제44조(시행세칙)**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, 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2.03.0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.06.01.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3.06.01.>

제 호

# 학 위 증 서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 
이수하여 전문기술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 
이 증서를 수여함.

학과(전공) :

학 위 명 : 00전문기술석사

년 월 일

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 영 도

학위등록번호 : 동의(전문기술석사)-0000-0000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3.06.01.>

제 호

# 수료증서

성명 :

생년월일 :

학과 :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전문기술석사의  
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 영 도